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공청회 개최 수정 공고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의회 공고 제2023-31호, '23. 11. 03.)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고흥군의회의장



1. 개최목적

-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3. 12. 11.(월) 14:00
- 장 소: 고흥군청 우주홀(1층)

3.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개최 전 제출기한 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제출기한: 2023. 12. 1.(금)~ 12. 8.(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1) 방 문: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1층)
- 2) 우 편: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1, 의회사무과(1층)
- 3) 팩 스: 061-830-5595
- 4) 이메일: cmj0736@korea.kr

5.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061-830-6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

성명		연락처	
주소	()		
의견 내용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의회회장 귀하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요약

구분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내용	
원칙 제18조의2 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u>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도로는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2. <u>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관광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u>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u>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u>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u>5미터</u>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예외 제18조의2 제4항	현행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염해농지*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마을에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일 것 다.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2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필지별 토양염도가 5.50dS/m(데시지멘스 퍼 미터)이상인 지역</p>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나. 사업장 소재지의 마을(사업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실거주 주거시설이 있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일 것

다.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2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주거밀집지역(10호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③ (생략)</p> <p>④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중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06.)</p> <p>⑤ ~ ⑦ (생략)</p>	<p>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1. <u>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u></p> <p>2.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u></p> <p>3. <u>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u></p> <p>가.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p> <p>나. <u>사업장 소재지의 마을(사업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실거주 주거시설이 있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일 것</u></p> <p>다. <u>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2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p> <p>라. <u>주거밀집지역(10호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p> <p>⑤ ~ ⑦ (현행과 같음)</p>